

통계작성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준수한다.

- 통계청·개인정보위 「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(통계작성편)」 발표

통계청(청장 이형일)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(위원장 고학수, 이하 '개인정보위')와 함께 통계 업무시 활용할 수 있는 「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(통계작성편), (이하 '지침)」을 마련하여 11월 16일에 발표하였다.

이번 지침은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'보호법')을 전면 적용하도록 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.

지침에서는 통계업무를 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준수사항을 제시하였다.

첫째,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및 통계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수집 대상, 항목 및 작성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.

아울러,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권한 변경 등을 관리·감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 특히,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,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

둘째,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현장조사 시 승인통계 작성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입 이용을 제한하고, 조사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.

셋째, 자료처리 및 공표 단계에서는 통계자료 처리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,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며, 통계 결과 공표 전 개인 식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.

넷째, 통계자료의 보유·제공 단계에서는 통계자료의 보유·제공 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준수할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 구제방법(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☎ 118 /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☎1833-6972, www.kopico.go.kr)을 안내하였다.

통계청과 개인정보위는 통계작성기관 등이 동 지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, 통계청·개인정보위 누리집(www.kostat.go.kr / www.pipc.go.kr), 개인정보보호포털(privacy.go.kr) 등에 공개하는 한편,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·홍보할 계획이다.

통계청 최연옥 차장은 “국가통계와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두 기관이 함께 마련한 지침인 만큼 통계작성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” 며, “아울러, 국가통계와 데이터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환경과 제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.” 고 말했다.

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“내실있는 통계 작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많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” 며, “앞으로도 통계작성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고, 필요에 따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.” 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통계청	책임자	과 장	이민경 (042-481-2051)
	통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이수복 (042-481-2426)
	개인정보보호위원회	책임자	과 장	김직동 (02-2100-3051)
	개인정보보호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정영수 (02-2100-3060)

통계작성 업무 단계별 준수사항 "이것만은 꼭!"

업무단계	주요 준수사항
<p>통계작성 기획</p> 	<p>수집대상·범위 및 작성방법 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사 대상 집단과 그 규모의 적절성을 통계기획 단계에서 확인 •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승인통계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인지 확인 •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의 수집 필요성 재차 확인 •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필요성 확인 <p>개인정보 보호 관련 관리계획 수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인정보취급자 감독 방안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·공개 •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획 수립 •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
<p>자료수집</p> 	<p>현장조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근거에 대한 안내 • 조사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<p>행정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한 통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 입수의 법적 근거 확인 •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 입수 시 보안 절차 준수
<p>자료처리 및 공표 등</p> 	<p>자료처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승인통계 작성 목적 범위 내에서 자료 처리 및 분석 • 행정자료 활용 시 유의사항 준수 <p>공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계 공표 시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유의 <p>안전조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• 개인정보의 유출, 통지 등의 신고 •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파기
<p>통계자료의 보유·제공 등</p> 	<p>통계자료의 보유 및 제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계자료의 안전한 보유 및 관리 • 통계작성 및 연구·분석 목적의 통계자료 제공 <p>정보주체의 권리 보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권 등 권리보장